

##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장현우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변호사

### I.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중재)제도의 도입

○

2005년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18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판결)에 의하야만 가능하였으나 언론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이나 중재를 청구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건수는 증가하고 청구액수도 고액이나,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 배상액 현실화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II. 손해배상 산정 가감표 제안 배경 및 경위

○○

2005년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정 이후, 2005. 9. 5. 언론중재위원회 조정2팀에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자료 및 관련 논문을 토대로 하여 손해배상 채점표(이하 ‘채점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2007. 6. 30. 조정2팀이 폐지되고 조정·중재 실무에서 채점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게 되었다.

2008년경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와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으로 기존 채점표를 부활하여 조사관을 중심으로 하여 손해배상 사건이 인용된 경우(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채점표를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축적하고 있었다. 현재 축적된 채점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기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표 1〉 손해배상 인용액별 인용사건수 (2009~2010년)

인용 사건수	~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2009	42	4	14	9	7	3
2010	32	9	13	6	3	0

〈표 2〉 손해배상 인용액별 빈도 (2009~2010년)

2009년도		2010년도	
인용액	횟수	인용액	횟수
100만원	9회	100만원	10회
200만원, 300만원	각 7회	50만원, 200만원	각 4회
150만원, 400만원, 500만원	각 3회	15만원, 300만원	각 3회
1000만원	2회	30만원, 125만원	각 2회
12만원, 25만원, 70만원, 80만원, 130만원, 170만원, 230만원, 250만원	각 1회	150만원, 250만원, 660만원, 1500만원	각 1회

〈표 3〉 평균인용액 (2009~2010년)

전체	조정	중재
2009년	3,594,103원	163만원
2010년	2,739,744원	250만원

### Ⅲ.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및 인용 금액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액수, 인용금액에 대한 고찰을 해보면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된 2009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금 71,400,000원이며, 2010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금 51,357,143원이다. 반면, 2009년, 2010년 손해배상 인용액의 빈도수 분포를 보면 위의 표와 같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인용된 후 사후적으로 채점표로 산정하면, 2009년 평균 손해배상 산정액이

금 3,816,560원이며, 2010년 금 2,697,444원이다.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고액이나, 상대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실제 손해배상 인용액은 2009년 3,594,103원에서, 2010년 2,739,744원으로 축소되었다. 2009년, 2010년 손해배상 인용액의 분포 빈도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채점표를 통한 산정의 경우에도 청구액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실제 인용액수와 차이도 상당하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수 산정에 있어서 축소되는 상황은 손해배상 금액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진행되는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중재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애당초 고액을 기재하고 있으며, 실제 인용액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장기적으로는 언론중재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자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 IV. 기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 1. 일반적 산정 기준

언론에 의한 인격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다른 일반적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산정과 동일하게 그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언론보도의 내용, 피해자측 사정, 가해자측 사정,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sup>1)</sup>.

구체적인 참작사유로는, ①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의 양(크기)과 위치, 보도의 경위와 목적, 진실성의 여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있어서 축소되는 상황은 손해배상 금액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 공익성의 유무와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신속성의 정도(일간·주간·월간 등), 보도의 사회적 영향, ② 피해자측 사정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의 지속성과 회복곤란성,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정도, 신분, 사회적 위치, 지명도 등,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③ 가해자측 사정으로,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재산·재정상태, 보도 이후의 태도, ④ 보도 이후 사정으로 언론이 기사를 정정·취소하였는지 여부, 원상회복처분을 함께 명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들 수 있다<sup>2)</sup>.

법원 하급심에서도 손해배상 산정 시에 피해자측의 사정은 물론 가해자측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사나 변호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해 언론보도가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 이외에 공직사회나 법조계 전체에 불신감을 심어준 점을 손해배상(위자료)액 산정자료로 삼은 판결<sup>3)</sup>들이 보이는 바, 이는 법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위자료의 제재적 또는 일반 예방적 기능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2)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구법률논단 1집(1999), 120~121면

3) 서울지방법원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2000. 2. 2. 선고 99가합7760 판결, 2000. 6. 21. 선고 2000가합1377 판결, 2002. 7. 26. 선고 2001가합65620 판결

기존 채점표는<sup>4)</sup> ① 공익성(5점), ② 진실성(10점), ③ 상당성(10점), ④ 표현방법(15점), ⑤ 전파력(15점), ⑥ 보도의 형식(10점), ⑦ 사회적 지위(5점), ⑧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15점), ⑨ 피해의 지속성, 회복곤란성(10점), ⑩ 언론사의 인력, 자산 규모(5점), ⑪ 보도 후 후속 조치의 태도(적극적 - 50%, 양호 - 30%, 미흡 - 10%)의 산정요인에 기초하여 가산하여 배점을 한 후 산출된 점수에 금 10만원을 곱하여 최고 1,500만원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였다.

만약 구체적인 사건에서 채점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배점이 53점이면, 이에 금 10만원을 곱하여 금 530만원(53점 × 금 10만원 = 530)이라는 손해배상 금액이 기존 채점표에 의하여 산정된다.

기존 배점표는 점수화, 개량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그동안 제대로 현실에서 사용되거나 활용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너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었기에 실제 채점하고 운영하여 이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하였다는 것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인 언론기관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하거나 심리 진행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이를 채점하기 어려운 여건도 한 이유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3.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소위원회 구성

기존 채점표의 산정 방식이 점수화, 개량화 차원에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논의를 위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V. 손해배상 소위원회 구성 및 논의 사항



언론중재위원회 기본 규칙 제7조(임시소위원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소위원회(이하 '손해배상 소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장진훈 서울 제2중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011. 9. 21. 1차 회의를 시작하여, 2011. 10. 13. 2차 회의, 2011. 10. 26. 3차 회의를 거쳐 기존 채점표와 더불어 손해배상 가감표(이하 '가감표'라 한다)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위하여 많은 논의 끝에 가감표를 하나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손해배상 소위원회에서는 기존 채점표 방식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각 항목들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중재부의 중재위원들의 판단 재량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강하며, 현실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침해법익 및 보도매체의 규모에 따라 분류한 기준 금액을 설정한 다음 침해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가감하는 방식의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가감표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위원들 중에는 기존의 채점표가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기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채점표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실무에 적용한 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손해배상 소위원회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구성된 취지에 입각하여 가감표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개진하기로 하였다.

4) <별지1> 참조

## VI. 가감표에 대하여<sup>5)</sup> ○○○○○○

### 1. 가감표 개요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마련한 가감표는 일단 보도 매체에 따라 각 중재부가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으며, 특히 최저 금액을 제시하여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반면, 가감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각 중재부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각 중재위원들은 가감 항목별로 세분하여 판단하게 함으로써 중재부별 편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결국 손해배상 기준액을, 기타 인격권과 명예훼손 등 침해 법익을 기준으로 크게 2부분으로 구분하고, 매체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액을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매체 영향력 기준으로 기준액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① ‘상’ 은 금 300만원, ② ‘중’ 은 금 200만원, ③ ‘하’ 는 금 100만원이 기준금액이 되며, 이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시작하게 된다.

손해배상 소위원회는 가감표를 작성, 수정하면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산정표를 지양하고 크게 상, 중, 하 정도로 폭을 나누어 제시하여, 중재부 간의 일정 수준의 형평성 유지와 아울러 신청인 피신청인이 모두 수용 가능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중재위원들이 지나치게 산정표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며, 일정한 수준의 산정 기준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2. 가감표 구성요소

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는 기준액 설정이다.  
(매체 영향력)

손해배상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 중 하나는 매체의 영향력에 대하여 산정에 있어서 기존보다 많은 의미 부여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준액을 매체의 영향력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금 100만원에서 금 300만원이 기준이 된다. 반면, 기존 채점표는 출발하는 기준액이 0원이다. 가감표는 기준액에서 시작하여 세부 요인에 따라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구조이다. 채점표와 비교하여 산정요인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해당 언론사는 자산 규모, 기자 인원, 발행부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	금 300만원	공중파 방송, 조선, 중앙, 동아일보, 네이버, 다음, 종편3사,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등
중	금 200만원	케이블 TV, 지역 민방, 위 조중등을 제외한 중앙일간지, 포털사, 라디오, 경제일간지, 스포츠지, 시사주간지, 중앙 월간지, 뉴스스 등
하	금 100만원	지방일간지, 분야별 전문매체, 지역 주간지, 지역 월간지 등

주위 기준은 예시이며, 변경될 수 있는 구분이다.

만약 공중파 방송에서 명예훼손 방송을 한 경우, 세부적인 가감 요인들을 고려하기 전에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사건은 금 300만원이 기준이 되어 산정이 시작될 것이다. 반면 스포츠지가 명예훼손 방송을 한 경우, 금 200만원이 기준이 되며, 지방 일간지의 경우 금 100만원이 기준이 될 것이다.

위 기준액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2009년, 2010년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평균 인용액수를 감안하였다. 손해배상의 현실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현실에서 벗어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기존의 평균 인용액을 감안하여 기준액을 제시하였다. 향후 가감표의 운영과정에서 실

5) <별지2>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 참조

제 사건에의 적용, 적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한 검증적인 접근을 통하여 수정,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나. 손해배상액 증액 구성요소

#### ① 악의성, 고의성(금 500만원)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 상의 기준 금액상 해당 언론사의 통상적인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은 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산정방식이다, 통상적인 과실을 뛰어 넘는 주의의무 위반이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악의성,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악의성과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위자료)의 금액을 금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가감표 산정 구성요소 중 가장 먼저 증액되는 가액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기준은 언론사의 악의성,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것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의의 결과였다.

본 악의성 등 구성요소 논의와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언론보도에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강한 경우가 있는 바,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손해배상 가감표만으로는 전체를 담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전체 금액 산정 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도출된 금액에 2-3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시기상조이며, 현행 법체계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도입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 ② 피해지속성, 회복곤란성(기타인격권 등 금 300만원, 명예훼손 금 500만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산정 요소 중 하나이다. 성추행 보도 등의 피해자 신원노출, 오보로 인한 직업의 상실, 영업폐업 등은 그 피해가 지속적이고 회복하기 곤란한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사안의 성격, 보도 시 상황, 피해자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넘는 경우, 산정하게 되는 구성요소이다. 즉,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경우 기준액으로 산정하며, 통상적인 경우를 벗어난 피해의 지속성이나 회복 곤란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명예훼손의 경우 금 500만원, 기타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증액가능하다.

#### ③ 수치심, 모욕, 당혹감(금 300만원)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의 침해의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구성요소이다. 초상권, 프라이버시, 음성권 등과 같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미담 기사이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무런 상관없이 방송에 자신 의사와 무관하게 얼굴이 촬영되어 보도되는 경우, 거리나 바다의 풍경을 담으며 당사자의 신체나 초상 등이 촬영되어 공표된 경우가 있으며, 영상이나 사진, 기사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 당혹감을 주게 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증액하는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표현방법 부적절성(금 200만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라 할지라도, 언론보도의 표현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sup>6)</sup> 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방송 보도 시 얼굴 등이 노출되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미흡한 경

“손해배상 소위원회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산정표를 지양하고 크게 상, 중, 하 정도로 폭을 나누어 제시하여, 중재부간의 일정 수준의 형평성 유지와 아울러 신청인 피신청인이 모두 수용 가능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우, 음성 변조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은 경우 등 피해자의 신원이 주위 사람들에게 노출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증가되는 가액의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 ⑤ 사회적 평가저하의 정도(금500만원)

명예훼손의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구성요소이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 침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요소도 있으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보도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과 타격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 시점, 표현의 단정성, 선정성, 보도의 사회적 파급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모 일간지의 누드 사진 게재와 성로비 의혹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1심 법원은 1억 5000만원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었다.

### 다. 손해배상액 감액 구성요소

#### ① 피해구제노력(기타인격권 침해 금 200만원, 명예훼손 금 400만원)

언론보도 후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및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감액 구성요소로 하였다. 언론사 스스로 피해자의 요구나 스스로의 확인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그 만

큼 감소하였기에 이에 상응하여 손해배상액도 감액되어야 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반론, 정정보도한 상황, 시기, 기간, 적정성 등이 고려할 요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98가합107104호)에서는 공동피고들 중 5시간 만에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5백만원), 보도 후 16일 이후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1천만원)사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액수의 차이를 든 사실도 있다.

언론사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감액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증액의 구성요소인 피해지속성, 악의성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 ② 공공성, 공익성(기타인격권 침해 금200만원, 명예훼손 금400만원)

일반적 언론보도에 있어서 공익성이 없는 보도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흥미위주로 특정인물에 대한 비방 보도가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울러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공공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구성하여 불법행위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러나 이에 달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어느 정도 공공성,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를 감액을 위한 구성요소로 평가하고자 한다. 즉 불법행위가 인정되나 공공성, 공익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의 감액의 구성요소로 고려한다.

특히 공공의 인물에 대한 보도의 경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평가받지 않는 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성 판단에 있어서 공적인 인물의 경우 일반인과는 다른 기준으로 구성요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③ 보충성, 긴급성(금100만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사안이 긴급하거나 당시 상황에서 촬영 등의 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 ④ 진실성, 상당성(금300만원)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일부 진실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하여 상당하게 노력한 경우가 있다.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일부 진실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진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요소로 고려한다.

보도를 한 언론 기관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액 감액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신청인의 진정성(금200만원)

신청인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진정성은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경우가 있다.

신청인이 언론사와 합의를 하고도 보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언론중재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치인,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액의 손해배상 신청을 하여 언론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신청에 있어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손해배상 감액 요소로 한다.

“가감표는 전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의 큰 틀,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중재부마다의 재량과 인정폭을 넓게 제공하여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각 항목들이 너무 세부화되어 있어 중재위원들의 판단 여지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울러 그동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여도 현실 적응력과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손해배상 활성화’와 ‘손해배상 현실화’를 위하여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 가감표를 제안하게 되었다.

가감표는 매체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의 기준액(하한액)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증액, 감액 구성요소로 대표적인 3-4가지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각 구성요소마다 상한액을 설정하여 각 중재위원들이 기준액의 동일에서 유지되는 전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의 큰 틀,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각 중재부마다의 위원들의 손해배상액 인정에 있어서의 재량과 인정폭을 넓게 제공하여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각 손해배상 산정 구성요소들이 담긴 가감표가 현장에서 살아 적용되는 기준이 되기를 기원하며, 향후 기준과 내용이 보완, 수정되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 VII. 종합



손해배상 소위원회는 기존 채점표 방식의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개량화되어 있고 이상적이기는 하나

[별지 1]

손해배상액 산정표

(2011서울조정 중재부): 침해유형: 명예( ) 초상권( ) 성명권( ) 음성권( ) 사생활( )

산정 요인	배점	부여	산정 요인	배점	부여
(1~5. 보도 내용 및 형식) (40)			(7~8. 피해 정도) (40)		
1. 동기·목적 ① 매우 악의적 ② 악의적 ③ 좋음	10 5 0		7-1. 사회적 평가의 저하 ① 극대 ② 대 ③ 중 ④ 소 ⑤ 없음	20 15 10 5 0	
2. 표현방법의 부적절성 (인신공격, 부정적인 내용에서 얼굴·실명 공개 등 피해자특정 정도, 단정적·선정적·부정적 표현) ① 대 ② 중 ③ 소 ④ 양호	10 6 3 0		7-2. 수치심·불쾌감·당혹감 (기타 인격권 침해의 경우) ① 극대 ② 대 ③ 중 ④ 소 ⑤ 없음	20 15 10 5 0	
3. 진실성 (명예훼손의 경우) ① 대부분 결여 ② 부분 결여 ③ 충족	5 2 0		8. 피해의 지속성·회복관성 ① 극대 ② 대 ③ 중 ④ 소 ⑤ 없음	20 15 10 5 0	
4. 상당성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확인의 노력 정도) ① 완전 결여 ② 부분 결여 ③ 약간 부족 ④ 충족	10 6 3 0		9. 언론사의 규모·재정상태(10) ① 대 ② 중 ③ 소 ④ 미약	10 6 3 0	
5. 보도 형식 (위치·시간×보도전체크기×횟수) ① 대 ② 중 ③ 소	5 2 0		10. 매체의 영향력 ① 대 ② 중 ③ 소 ④ 미약	×1.5 ×1.2 ×1 ×0.7	
6.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10) (연령, 성별, 직업, 경력, 법인의 인지도·규모) ① 고 ② 중 ③ 저 ④ 미약	10 6 3 0		11. 보도 후 후속조치 ① 없음 ② 약간 ③ 양호 ④ 적극적	×1 ×0.9 ×0.7 ×0.5	
			<b>합계</b>		

※ 1점당 10만원, 최고 1,500만원  
 ※ 위 배점을 기본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배점에서 1~2점을 가감하여 부여할 수 있음  
 ※ 각 산정요인별 배점 시 다른 요인을 중복하여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

작성일(심리일): 2011. . . . . 조사관:

\*첨부: 접수 부여 이유

## 점수 부여 이유

구분	산정 요인	점수 부여이유
보도 내용 및 형식	1. 동기·목적	
	2. 표현방법의 부적절성	
	3. 진실성 (명예훼손의 경우)	
	4. 상당성 (명예훼손의 경우)	
	5. 보도 형식	
피해자 사정	6.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피해의 정도	7-1. 사회적 평가의 저하	
	7-2. 수치심·불쾌감·당혹감 (기타 인격권침해의 경우)	
	8. 피해의 지속성·회복곤란성	
언론사 사정	9. 언론사의 규모·재정상태	
	10. 매체의 영향력	
보도 후 사정	11. 보도 후 후속조치	

[별지 2]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사건 : 2011서울조정

1. 초상권, 프라이버시, 음성권, 성명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

(단위:만원)

보충성, 긴급성	공공성, 공익성	피해구제 노력	기준액 (매체영향력)	악의성, 고의성	피해지속성, 회복곤란성	수치심, 모욕 당혹감	표현방법 부적절성	결과액
-100 ( )	-200 ( )	-200 ( )	상	+500 ( )	+300 ( )	+300 ( )	+200 ( )	
			300					
			중					
			200					
			하					
100								

2. 명예훼손

(단위:만원)

신청인의 진정성	상당성, 진실성	공공성, 공익성	피해구제 노력	기준액 (매체영향력)	악의성, 고의성	피해지속성, 회복곤란성	사회적 평가 저하의정도	표현방법 부적절성	결과액
-200 ( )	-300 ( )	-400 ( )	-400 ( )	상	+1000 ( )	+500 ( )	+500 ( )	+300 ( )	
				300					
				중					
				200					
				하					
100									

의견	
----	--

2011. . . .

작성자 :